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0. 10. 12. ~ 10. 22.) 중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프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프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5월 29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베트남	사비(SAVI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10.65
	탄흥 (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10.27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준마 푸토 (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 키우티 준마 (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10.55
	옌바이 (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9.25
	롱자 (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9.18
	그 밖의 공급자	10.54

주)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